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6호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자 모집 공고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자 모집

- 사업목적:** 주말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 운영기준:**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붙임 1] 참고
 -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붙임 2] 참고
 - (시설비) 시설당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 * 내부 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 (운영비) 시설당 최대 27백만원까지 지원
 -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 모집기간:** 2월 15일(월) ~ 2월 23일(화)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welfare@rhof.go.kr)으로 제출
 - * 사업신청서 양식은 별첨 파일 참고
 - 지원규모:** 598백만원, 시설 수 미정 ※ 2020년: 420백만원, 23개소
 - 결과발표:** 3월 중(개별연락 및 누리집 게시)
 -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444) 또는 농식품부(☎ 044-201-1567)
- ☞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지침서'(별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의 설치

- 시설규모 :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돌봄방의 면적은 최소 39.6m²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m² 이상)
- 설치지역 : 농촌지역으로 농번기 주말에 돌봄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설치기간 :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 구비시설 : 화장실(영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과 조리시설 구비 필요
- 기타 : 돌봄방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 개인용도 및 공동 사용 불가
 - 다만, 주중 어린이집 등 보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운영

- 명칭 : 「○○○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라 함.
- 돌봄대상 :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 ※ '21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 확대, '21년 운영결과에 따라 미비점 보완 등 추진
- 운영기간 : 4개월~6개월(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 및 기간 결정)
- 돌봄시간 : 주 2일(토, 일요일), 각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종사자 근무시간 : 시설장(4시간), 돌보미(10시간), 취사원(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 대체근무 등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입소 우선순위
 - 동일 순위 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부모가 모두 농업인인 경우, 단, 한부모가정인 경우 1순위 적용
 -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로 증빙
 - (2순위) 부모 중 1인 또는 보호자가 농업인인 경우
 - (3순위)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두 비농업인인 경우

○ 운영방식

- 사전에 아이돌봄방 이용신청서를 받아 시설 규모에 적절한 아동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 가능(시설 재량).

○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또는 돌보미	취사원
영유아 15인 이하	1명	1~2명	1명
영유아 15인 초과	1명	2명	1명

○ 보육교직원

- 시설장은 아동현황 및 출결기록, 돌봄방 운영일지, 돌보미 근무상황부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시설장 및 돌보미(보육교사 포함)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2인중 1인은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았거나, 육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운영 가능

구분	자 격 기 준
시설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교육을 이수한 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p>※ 돌봄방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또는 지역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돌보미 등을 활용</p>

붙임 2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설비 :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운영비 :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최대 지원액

- 아이돌봄방은 보조금을 집행 시 e나라도움에 집행비목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등록

항목	4개월 운영	5개월 운영	6개월 운영	비고
합계	1,844만원	2,292만원	2,741만원	○ 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각 항목간 조정가능 ○ 단, 인건비를 조정하려는 경우 희망재단 이사장의 승인 필요
○ 인건비	1,440만원	1,800만원	2,160만원	○ 시설장이 돌보미 역할을 겸임할 경우 돌보미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단, 중복 지원은 불가)
- 시설장	192만원 (1명×1.5만원×4시간×8일×4개월)	240만원 (1명×1.5만원×4시간×8일×5개월)	288만원 (1명×1.5만원×4시간×8일×6개월)	○ 여성가족부 ‘기관과견 아이돌보미’ 활용 시 기준단가 적용하여 지급 가능
- 취사원	192만원 (1명×1.5만원×4시간×8일×4개월)	240만원 (1명×1.5만원×4시간×8일×5개월)	288만원 (1명×1.5만원×4시간×8일×6개월)	○ 교통비는 돌보미와 취사원에게만 지급하고, 시설당 1일 3만원이 지급 한도
- 돌보미	960만원 (2명×1.5만원×10시간×8일×4개월)	1,200만원 (2명×1.5만원×10시간×8일×5개월)	1,440만원 (2명×1.5만원×10시간×8일×6개월)	- 시설장이 돌보미 역할을 겸임할 경우 교통비 지급 가능
- 교통비	96만원 (3명×1만원×8일×4개월)	120만원 (3명×1만원×8일×5개월)	144만원 (3명×1만원×8일×6개월)	○ 다문화 영유아가 있을 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해야 함
○ 교재·교구비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영유아 현원에 따라 지급
○ 급식·간식비	256만원 (20명×4천원×8일×4개월)	320만원 (20명×4천원×8일×5개월)	384만원 (20명×4천원×8일×6개월)	○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차량운영비 등
○ 기타 운영비	98만원 (24.5만원×4개월)	122만원 (24.5만원×5개월)	147만원 (24.5만원×6개월)	

붙임 2

농번기 아이돌봄방 심사항목 및 기준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돌봄방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사업평가, 성과측정 방법 등) ■ 사업에 대한 적극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20점
운영능력 및 적절성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수행경험 유/무, 수행경험 등)	10점
	■ 사업추진 능력(시설장, 돌보미, 취사원 등 인력 확보 여부 등)	10점
	■ 보조금집행계획 현실성(소요예산 산출근거 정확성 및 집행방법의 이해도 등)	10점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영유아 수 - 10명 이하 (10점) / 10명~15명 (20점) / 15명~20명 (30점) 	30점
	■ 지원의 효과성(사업의 파급성 및 홍보계획 등)	10점
지속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계성	5점
	■ 농업인 인구 및 대상지역 적합성	5점
가감점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합 계		100점

※ 채점기준

구분	매우적합	적합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점	20	16	12	8	-
15점	15	12	9	6	-
10점	10	8	6	4	-
5점	5	4	3	2	-